

4.5.15 학생창업지원규정

제정 2015. 02.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우리 대학”) 학칙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열린 창업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학생이 보유한 기술을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고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휴학: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창업강좌: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로 창업실습(창업준비활동 교과목), 창업현장실습(창업현장실무활동 교과목) 등의 교과목을 말한다.
4.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를 말한다.
5. 창업학점교류: 창업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또는 기관에서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심의 및 운영) 교무처장은 창업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사제도의 세부운영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 역할) 창업교육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창업휴학 심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2. 창업대체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3. 창업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창업과 관련된 사항

제5조(창업휴학) ①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고,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가할 수 있다.

- ②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제한기간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년(4학기)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 ③ 창업휴학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입학 이후 창업에 한함)을 하였거나 창업교육 과정 일정 수준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 ④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휴학을 불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조건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교무처장 또는 학과장은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대체학점인정 교과운영) ① 창업대체학점인정 교과목은 창업준비활동과 창업을 구분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신청자격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창업현장실습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 창업현장실습 기간에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폐업 시 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창업대체학점인정 교과는 다양한 전공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으로 개설한다.

④ '창업실습'교과의 담당교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시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발표평가, 현장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학점에 반영한다.

⑤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은 창업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계획 및 추진 현황자료 제출을 통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⑥ 성적평가는 P(Pass) 또는 F(Fail)로 하며, 필요한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업대체학점인정 운영기준) ① 창업준비활동은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전임교원 지도교수 등록, 다수의 참여학생,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창업활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이 아닐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창업경진대회는 대학, 공공기관, 정부, 기업에서 주관 경진대회라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창업대체학점인정 제외 대상 업종(금융 및 부동산 관련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게임링 및 베틀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실무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제8조(학점인정) ①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 학기 3학점이 내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창업이 '창업현장실습'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며 학기별 15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3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창업학점교류) 창업 교과목에 대하여 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개설된 창업강좌를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학점교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창업 지원내역) 시설 및 기자재 지원, 행정 및 학사 지원은 별도의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생창업 신청서의 제출) 창업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사업) 계획서
2.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 요약서

3.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서
4. 창업 아이템 개발 일정표
5. 지도교수 지도 계획서
6.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12조(선정 기준) 학생창업자의 선정은 실무위원회에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우리 대학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4. 기타 사항

제13조(창업 지원 기간) ① 학생창업자로 선정 후 1년간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지원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학생 창업자의 의무) ① 학생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생창업자는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졸업 전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제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5조(학생 창업의 사후 관리) ① 학생창업자가 수행한 1년 간의 사업을 평가하여 활동이 저조한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② 우수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대외 홍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